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1175

제출년월일 : 2019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에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공공성 있는 콘텐츠를 생산·유통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영방송으로의 전환을 위해, 사업소 조직인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을 출연기관인 재단법인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물출연 및 2020 회계연도 서울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1)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2)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주요 사업

- 방송을 통한 교통 및 생활정보 제공
- 지역 관련 정보 제공 및 문화예술 관련 방송
- 주한 외국인과 국내 방문 외국인을 위한 정보의 제공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방송사업
- 시민의 동등한 미디어 참여와 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
- 해외방송과의 국제교류·협력
- 재단의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광고·협찬 등 수익 사업
-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다. 출연의 필요성

- 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동등한 정보 접근의 보장,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

라. 기관개요

1)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1(에스플렉스센터)

2) 규 모 : 22,155㎡(약 6,714평)

3) 전경 및 위치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편성 및 현물출연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시민소통담당관 방송소통팀 이상민 (☎ 2133-6442)